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4

2009년 6월 3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8일, 지용훈 의원 외 12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09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지용훈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법률조정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제33조”를 “제48조”로 개정하고,

○ 법률조문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한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지역내의”를 “특정지역 내의”로 하고, “있을 때에는”을 “있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 조제목 “제3조 (공사의 시행)”을 “제3조(공사의 시행)”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분담금) 공업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요가등은”을 “수요가 등은”으로 하고, “인정할 때에는”

을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익월분”을 “다음번”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검정 수수료,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은 수요가 등으로부터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제6조 조제목 “제6조(공업용수사용료)”를 “제6조(공업용수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요금”을 “사용료”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제3호의”를 “별표 3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할 때에는”을 “운영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9조 조제목 “제9조(타 조례의 적용)”을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제1조(목적) 이 목적은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의 범위)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2조(급수의 범위) ① ---------- ---------- ---------- ---------- **인정할 경우에는** ---------- --- **그 밖의** ----------.
②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그 밖의** ---------- -- **한 경우에는**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내의** 산업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장치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 ---------- **특정지역 내의** -- ---------- ---------- **있을 경우에는** ---------- ---------- ----------.
제3조 (공사의 시행) 계량기 전의 공사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3조(공사의 시행)** ----------.

제4조(시설분담금)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분담금) 공업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기의 고장) ① 공업용수 수요가등은 계량기의 고장 또는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기의 고장) ① ----- 수요가 등은---------- --- 판단되는 경우에는 ---------- -------.
② 전항에 의한 계량 오차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다음번 ---------- .
③ 1항의 검정 수수료 및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은 수요 가동으로부터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검정 수수료,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은 수요가 등으로부터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제6조(공업용수사용료)	제6조(공업용수 사용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업용수 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② ---------- --.
사용요금 = ----------	사용료 = ----------
제7조(급수관 손료)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의 급수관(계량기 제외) 손료를 징수한다.	제7조(급수관 손료) ---------- ----------별표 3의 ---------- ----------.
제8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이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운영 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가압료 징수) ① ---------- --- 운영할 경우에는 ---------- ---------- ---.
② 전항의 운영 설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 --.

제9조(타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 **따른** ---------- **따라** ----------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